

『베트남, 액화석유가스(LPG)용 강철 용기의 안전에 관한 국가기술표준 개정안』

2026. 7. 7.

TBT 통보여부	통보	HS Code	7311
통보국	베트남	전년도 수출액 (천불)	793
작성기관	KOTITI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액화석유가스(LPG)용 강철 용기의 안전에 관한 국가 기술규정(QCVN 04:2013/BCT)」의 적합성 선언,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및 관리체계 관련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
- (적용범위) HS 코드 - 7311*
 - * 철강으로 만든 용기 중 내용적 0.5리터 이상 150리터 이하의 재충전용 강철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적합성 인증·선언, 적합성평가 방식, 사후관리, 제조·판매·수입 조직의 책임 및 지방 산업무역국의 시행 책임 규정 개정
- (인증 정보) 시장 유통 전 적합성평가 및 적합성 선언 실시
 - (인증 절차) 적합성평가 → 적합성 선언 → CR 적합성 표시 부착 → 시장 유통
 - (유효기간) 방식 5 적용 제품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정기 사후관리 평가 대상
 - (기타사항) 적합성 선언을 완료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 유통 불가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가스용기 안전 확보를 위해 설계·제조·시험·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운영
 - (미국) 가스용기 안전기준 및 DOT 운송용기 규정을 통해 설계·시험·표시요건 관리
 - (중국) 「특수설비안전법」 및 「가스 용기 안전기술규정」에 따라 가스 용기 안전관리
 - (일본) 「고압가스보안법」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의 제조, 검사 및 안전관리 실시
 - (EU) 「운송가능 압력장비 지침」 및 관련 EN 규격에 따라 적합성평가 및 Pi 표시 운영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적합성평가 체계를 정비하는 규제로 기업의 추가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권고사항) 베트남 수출 대상 강철 LPG 용기의 적용 방식, 시험 성적서 활용 가능성, 적합성 선언 등록, CR 표시 및 방식 5 사후 관리 일정 사전 확인 필요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적합성평가 대응 부담) 방식 5 또는 방식 7 적용 여부 확인, 인정 인증기관 또는 인정·지정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확보 필요
- (사후관리 대응) 방식 5 적용 제품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시료시험 및 생산공정 또는 경영시스템 평가에 대한 정기 대응 필요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중소기업) 방식 7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수입자와 등록·표시 대응 협력
 - (중견기업) 방식 5 적용 시 사후관리 일정 및 자료 통합 관리
 - (대기업) 규정 개정 동향 모니터링, 현지 기관·수입자 협력체계 구축

목 차

요약문	1
I. 규제 개요	2
II. 규제 세부 내용	3
III. 관련 인증 정보	6
IV.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9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9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11
V.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2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12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13
VI. 대응 방안	14
참고 1 참고자료	15
참고 2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16

요 약 문

규제명	영문	Amendment 01:2026 QCVN 04:2013/BC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safety of steel cylinders for Liquefied Petroleum Gas (LPG)		
	국문	개정안 01:2026 QCVN 04:2013/BCT 액화석유가스(LPG)용 강철 용기 안전 관련 국가 기술 규정		
WTO/TBT 통보문 번호	VNM/416	통보국	베트남	
채택(예정)일	추후 결정	시행현황	개정 초안	
시행(예정)일	추후 결정	통보일(고시일)	2026.06.22.	
HS Code	7311	의견수렴 마감일	2026.07.22.	
총 수출액 (천불)	226,784 (2025년 기준)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793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무역부; 산업안전환경국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 and Environment agency 		
	규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철 LPG 용기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안전 확보 및 위험기반 적합성평가 체계 정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 선언, 적합성평가 방식, 사후관리, 제조·판매·수입 조직 책임 및 지방 산업무역국 시행 책임 관련 규정 개정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기술요건의 전면 변경이 아닌, 현행 법령에 맞춘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정비 성격으로 판단 			
대응 여부	예상 기업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평가 방식 확인, 시험성적서 확보, 적합성 선언 등록, CR 표시 및 방식 5 사후관리 대응 부담 가능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별 방식 5 또는 방식 7 적용 여부 확인, 인정 인증·시험기관 사전 확인, 수입자와 적합성 선언 등록 및 사후관리 대응체계 구축 필요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액화석유가스(LPG)용 강철 용기의 안전에 관한 국가기술규정(QCVN 04:2013/BCT)」을 현행 법령 및 적합성평가 제도에 맞게 개정 추진
 - 「법률 제78/2025/QH15」, 정부령 제22/2026/NĐ-CP 및 제37/2026/NĐ-CP의 규정 반영, 위험기반 적합성평가 체계 도입 및 강철 LPG 용기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안전관리 체계 정비

□ 규제 요지

- 기존 규정의 적합성 인증·적합성 선언, 적합성평가 방식, 사후관리 및 관리기관 관련 규정을 개정
 - 적합성평가 방식 5 및 방식 7 적용 근거 정비, 적합성 선언 절차 개정, 적합성 인증에 대한 정기 사후관리 기준 신설, 관리규정 정비 및 관리기관 관련 규정 개정

□ 적용대상

- (HS 코드: 7311) 철강으로 만든 용기
 - 내용적 0.5리터 이상 150리터 이하의 재충전용 강철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 시행일

- 추후 결정

2

규제 세부 내용

□ 개정 대상 규정

- 「액화석유가스(LPG)용 강철 용기의 안전에 관한 국가기술규정(QCVN 04:2013/BCT)」의 개정 초안 마련
 - 기존 기술요건은 유지하면서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평가 제도, 사후관리 및 관리체계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

□ 주요 개정사항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3조	- 용어 정의 규정 운영	- 제3항 및 제4항 삭제
10·11·12조	- LPG 충전 안전, 용기 검사 및 용기 수리 관련 규정 운영	- 제10조 제1항 d호,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a호 삭제
13조	- 기존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평가 규정 운영	-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평가 체계 개정
13a조	- 해당 규정 없음	- 사후관리 규정 신설
14·15조	- 적합성 선언 및 품질검사 규정 운영	- 삭제
16조	- 조직·개인의 일반 책임 규정	- 제조·판매·수입 조직의 책임 규정으로 개정
17·18·19조	- 제품 적합성 선언, 품질 및 표시 관련 규정 운영	- 삭제
21조	- 지방 산업무역국 책임 규정 운영	- 시행 및 연례 보고 책임 규정 개정

○ 적합성 선언 근거 개정

- 인정받은 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 결과를 근거로 적합성 선언 가능
- 인정 또는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조직 또는 개인이 실시한 자체 적합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적합성 선언 가능
- 적합성표시(CR)는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제14/2026/TT-BKHCHN호」에 따라 사용

- 적합성평가 체계 개정
 - 방식 5 및 방식 7을 LPG 용기의 적합성평가 방식으로 적용
 - 방식 5는 대표시료 시험과 생산공정 또는 경영시스템 평가를 통한 인증, 방식 7은 제품 로트 시험을 통한 인증으로 규정

- 사후관리 제도 신설
 - 방식 5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강철 LPG 용기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정기 사후관리 실시
 - 최초 사후관리는 인증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실시
 - 이후 사후관리는 직전 사후관리 평가 종료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실시
 - 사후관리 시료는 제조 현장, 시장 또는 양측에서 채취 가능

- 조직의 책임 및 관리체계 정비
 - 제조·판매 조직은 기술규정 준수 및 「제품 및 상품 품질법」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 부여
 - 제조·수입 조직은 시행령 제22/2026/ND-CP에 따라 적합성 선언 등록 의무 부여
 - 성 및 중앙직할시 산업무역국의 규정 시행 및 연례 보고 책임 개정

□ 규정 주요 내용

○ 적용범위 및 대상

- 내용적 0.5L 이상 150L 이하의 재충전용 강철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의 설계, 제조, 수입, 수리, 검사, 보관, 운송 및 사용에 관한 안전요건 규정
- 설계, 제조, 수입, 수리, 소유, 검사, 인도, 운송 및 사용과 관련된 조직 및 개인에 적용

○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평가

구분	주요 내용
적합성 선언	- 인정 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 결과 또는 인정·지정 시험기관 시험결과를 기반으로 한 자체 적합성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수행
적합성평가 방식	- 방식 5(대표시료 시험, 생산공정 또는 경영시스템 평가), 방식 7 (제품 로트 시험) 적용
사후관리	- 방식 5 적용 제품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정기 사후관리 실시 (최초 12개월 이내, 이후 24개월 이내)
적합성표시	-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제14/2026/TT-BKHCN호」에 따른 CR (Conformity Mark) 적용

○ 조직의 책임 및 관리

구분	주요 내용
제조·판매 조직	- 기술규정 준수 및 「제품 및 상품 품질법」에 따른 품질 확보
제조·수입 조직	- 적합성 선언 등록 의무 이행
지방 산업무역국	- 규정 시행 지도 및 연례 보고 수행

3

관련 인증 정보

□ 적합성평가

- 강철 LPG 용기는 사용 전에 적합성평가를 완료하고 적합성 선언을 실시해야 함
- 절차: 적합성평가 → 적합성 선언 → CR 적합성 표시 부착 → 시장 유통
- 적합성평가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적용

적합성평가 구분	주요 내용
방식 5	- 대표시료 시험, 제품 유형에 대한 적합성 인증, 생산공정 또는 경영시스템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 유효기간 동안 사후관리 평가 수행
방식 7	- 제품 또는 제품 로트에 대한 시험평가를 통한 적합성 인증

- 적합성 선언은 다음 중 하나를 근거로 수행

구분	근거
인증기관 기반	- 법령에 따라 인정받은 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 결과
시험결과 기반 자체평가	- 법령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된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근거로 조직 또는 개인이 수행한 자체 적합성평가 결과

- 적합성 선언 완료 후 과학기술부 시행규칙에 따른 CR 적합성 표시를 부착한 제품만 시장 유통 가능

□ 사후관리

- 방식 5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강철 LPG 용기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사후관리 평가 실시
- 사후관리는 대표시료 시험과 생산공정 또는 경영시스템 평가를 통해 수행

- 사후관리 시험용 시료는 제조 현장, 시장 또는 제조 현장과 시장 모두에서 채취 가능
- 최초 사후관리는 인증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실시
- 이후 사후관리는 직전 사후관리 평가 종료일부터 24개월 이내 실시
- 성 및 중앙직할시 산업무역국은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위와 협력하여 관할 구역 내 기술규정의 시행을 지도
- 매년 관할 구역 내 LPG 용기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산업무역부 산업안전환경국에 보고

□ 표시사항

- 적합성 선언을 완료한 제품은 CR 적합성 표시를 사용해야 함
 - CR 적합성 표시의 부착 및 사용은 과학기술부 시행규칙에 따름
- 제품 표시는 용기 종류에 따라 다음 정보를 포함

구분	주요 표시사항
강철 LPG 용기	- 제조자 또는 상표, 제조연도, 일련번호, 용기 질량, 내용적, 시험압력, 검사표시 등
적합성 표시	- 적합성 선언 완료 후 CR 적합성표시 부착,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제14/2026/TT-BKHCN」에 따른 표시 사용

□ 신청 시 유의사항

- (인증 유효기간) 방식 5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정기 사후관리 평가를 받아야 하며, 방식 7은 제품 또는 제품 로트 단위로 적합성평가 실시

□ 적합성평가기관

○ 인정 인증기관

- 방식 5 또는 방식 7에 따른 강철 LPG 용기의 적합성 인증 수행
- 방식 5 적용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 수행

○ 인정 또는 지정 시험기관

- 강철 LPG 용기의 시험 수행
- 적합성 선언을 위한 시험 결과 발급

○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업안전환경국

- 국가기술규정 개정 추진 및 운영 총괄
- 성 및 중앙직할시 산업무역국의 연례 보고 접수

○ 성 및 중앙직할시 산업무역국

- 관할 구역 내 국가기술규정 시행 지도
- LPG 용기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취합·보고

4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미국

- (현행 규정) 「위험물 운송법」¹⁾ 및 「연방규정집」²⁾에 따라 가스 용기의 제조, 검사, 표시 및 운송 요건 적용
 - 재충전용 가스 용기는 DOT 용기 규격에 따라 제조 및 표시 관리
- (도입동향) 별도 신규 제도 도입보다 기존 위험물 운송 및 용기 안전관리 체계 유지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LPG,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 용기는 제품 특성별 제조, 재검사, 표시 및 운송 안전기준 적용

2 중국

- (현행 규정) 「특수설비안전법」³⁾ 및 「가스 용기 안전기술규정」⁴⁾에 따라 가스 용기 안전관리 실시
 - 설계, 제조, 형식시험, 충전, 사용 및 정기 검사 요건 적용
- (도입동향) 특수설비 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가스 용기의 전 주기 관리 강화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압력용기 및 가스 용기는 특수설비 관리체계 내에서 관리

1)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ation Act

2)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9

3)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4) 气瓶安全技术规程

3

일본

- (현행 규정) 「고압가스보안법」⁵⁾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의 제조, 검사, 표시, 충전 및 재검사 관리
 - 용기검사, 각인, 표시 및 재검사 체계 운영
- (도입동향) 고압가스 용기의 검사 및 재검사 중심 안전관리 체계 유지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LPG 용기는 고압가스 용기 관리체계 내에서 충전, 운송, 사용 및 재검사 관리

4

EU

- (현행 규정) 「운송가능 압력장비 지침」⁶⁾에 따라 운송 가능 압력 장비의 적합성평가, 검사 및 Pi 표시 관리
 - LPG 용기 등 운송 가능한 압력장비는 적합성평가, 정기검사 및 표시 요건 적용
- (도입동향) 적합성평가, 정기검사, 시장감시 및 수입자 책임 중심 관리체계 유지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가스용기 및 운송가능 압력장비의 안전성, 표시 및 정기검사 관리 지속

5) 高圧ガス保安法

6) Directive 2010/35/EU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미국	중국	일본	EU	베트남
상위 법·프레임	49 CFR 위험물 운송규정	특수설비안전법, 가스 용기 안전기술규정	고압가스보안법	운송가능 압력장비 지침	QCVN 04:2013/BCT
주요 규제부처	미국 교통부	국가시장감독관 리총국	경제산업성	유럽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베트남 산업무역부
적용대상	가스 용기, 재충전용 용기	가스 용기	고압가스 용기	운송가능 압력장비	0.5L 이상 150L 이하 재충전용 강철 LPG 용기
제품 구분	재충전용 및 비재충전용 용기	가스 용기 전반	고압가스 용기	운송가능 압력장비	재충전용 강철 LPG 용기
주요 요구사항	제조, 표시, 재검사	설계, 제조, 형식시험, 정기검사	제조, 검사, 표시, 재검사	적합성평가, 검사, Pi 표시	재료, 설계, 제조, 시험, 표시, 적합성평가
적합성 평가	DOT 규격 적합성	형식시험 및 감독검사	용기검사	적합성평가 및 검사	방식 5, 방식 7
표시	DOT 표시	용기 표시	각인 및 표시	Pi 표시	CR 적합성 표시
사후관리	재검사, 재자격 부여	정기검사, 감독검사	재검사	정기검사, 시장감시	사후관리 평가
유통 전 조치	규격 적합 및 표시 확인	시험·검사 적합성 확보	용기검사 및 표시	적합성평가 및 Pi 표시	적합성평가, 적합성 선언, CR 표시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항목	내용
규정명	Amendment 01:2026 QCVN 04:2013/BC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safety of steel cylinders for Liquefied Petroleum Gas (LPG)
관리기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 and Environment agency
법적근거	Law No. 78/2025/QH15, Decree No. 22/2026/NĐ-CP, Decree No. 37/2026/NĐ-CP
통보문서	G/TBT/N/VNM/416
주요목적	강철 LPG 용기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안전 확보 및 위험기반 적합성평가 체계 정비

○ 주요 요구사항

요구사항	검토결과
적합성 선언	강철 LPG 용기는 사용 전 적합성 선언 필요
적합성평가	방식 5 또는 방식 7 적용
사후관리	방식 5 적용 제품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정기 사후관리 평가 대상
적합성표시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제14/2026/TT-BKHCH호」에 따른 CR 적합성표시 사용
사업자 책임	제조·판매 조직은 기술규정 및 「제품 및 상품 품질법」 준수 필요, 제조·수입 조직은 적합성 선언 등록 필요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평가항목	평가결과
필요성	LPG 용기의 안전한 제조·수입·유통·사용 확보 목적의 규정 정비로 필요성 인정
비차별성	자국·수입 제품 간 명시적 차별 요소는 확인되지 않음
최소무역제한성	적합성평가·선언·사후관리 체계 정비 중심
투명성	WTO TBT 통보 및 의견수렴 절차 실시

- 경제성 분석(시나리오)
 - (직접 비용) 방식 5 또는 방식 7 적합성평가 수행, 시험성적서 확보, 적합성 선언 등록 및 CR 적합성표시 적용 과정에서 비용 발생 가능
 - (간접 비용) 방식 5 적용 시 인증 유효기간 동안 사후관리 평가 대응, 시료 채취 대응, 생산공정 또는 경영시스템 평가 준비 등 행정·품질 관리 부담 발생 가능
- 결론 및 권고사항
 - (결론) 강철 LPG 용기의 적합성 선언,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및 관리체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에 해당
 - (권고사항) 현지 수입자와 협력하여 적용 방식 5 또는 방식 7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성적서·적합성 선언·CR 표시·사후관리 대응자료를 사전 정비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WTO TBT 통보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자국 제품과 수입 제품 간 차별적 요건은 확인되지 않음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사항 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사항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사항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해당사항 없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사항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사항 없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사항 없음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 기업	시험·인증 부담 최소화 및 수입자 협력	① 방식 7 적용 가능 여부 우선 검토 ② 베트남 수입자와 적합성 선언 등록 및 CR 표시 적용 책임 분담 ③ 인정 또는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요건 사전 확인
중견 기업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 일정 관리	① 방식 5 적용 시 최초 12개월 이내 사후관리 일정 관리 ② 생산공정 또는 경영시스템 평가 대응자료 정비 ③ 제품군별 시험자료, 적합성 선언서, 표시자료 통합 관리
대기업	베트남 규제 대응체계 내재화	① 베트남 LPG 용기 규정 및 관련 시행령 개정 동향 상시 모니터링 ② 현지 인증기관·시험기관·수입자와 정기 협의체계 구축 ③ 글로벌 가스용기 인증·시험자료와 베트남 적합성평가 자료 연계 관리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참고 1

참고자료

□ 참고자료

연번	국문	원문
1	「액화석유가스(LPG)용 강철 용기의 안전에 관한 국가기술규정(QCVN 04:2013/BCT)」	QCVN 04:2013/BC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Safety of Steel Cylinders for Liquefied Petroleum Gas (LPG)
2	「제품 및 상품 품질법」 법률 제78/2025/QH15	Law No. 78/2025/QH15 on Product and Goods Quality
3	「제품 및 상품의 품질 검사 및 시장감시에 관한 정부령」 정부령 제22/2026/NĐ-CP	Decree No. 22/2026/NĐ-CP on inspection of product and goods quality and market surveillance
4	「제품 및 상품 품질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 규정하는 정부령」 정부령 제37/2026/NĐ-CP	Decree No. 37/2026/NĐ-CP detail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Product and Goods Quality
5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제14/2026/TT-BKHCH호」	Circular No. 14/2026/TT-BKHCH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개정 01:2026 QCVN 04:2013/BCT
액화석유가스(LPG)용 강제 용기의 안전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하노이(Hà Nội), 2026

서문

「개정 01:2026 QCVN 04:2013/BCT」는 「QCVN 04:2013/BCT 액화석유가스(LPG)용 강제 용기의 안전에 관한 국가기술규정」의 일부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한다.

「개정 01:2026 QCVN 04:2013/BCT」는 액화석유가스(LPG) 분야 국가기술규정 개정 초안 작성위원회가 작성하고, 산업안전기술환경국(Cục Kỹ thuật an toàn và Môi trường công nghiệp)이 심의를 거쳐, 산업무역부 장관이 2026년 「시행규칙 제 /2026/TT-BCT 호」에 따라 공포한다.

개정 01:2026 QCVN 04:2013/BCT

액화석유가스(LPG)용 강제 용기의 안전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제I장 일반 규정

1.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II장 기술 규정

2. 다음 규정을 삭제한다.

- 제10조 제1항 d호
 - 제11조
 - 제12조 제1항 a호
-

제III장 관리 규정

3.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에 관한 규정

1.

LPG 용기는 사용 전에 본 기술규정 제II부의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적합성 선언을 하여야 한다.

2.

LPG 용기에 대한 적합성평가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 방식 5: 제품 또는 상품의 형식(Type) 및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에 대한 시험과 생산공정 또는 경영시스템 평가를 통한 인증
- 방식 7: 제품 또는 상품의 생산 로트(Lot)에 대한 시험평가를 통한 인증

3.

적합성 선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근거로 실시한다.

- 법령에 따라 인정된 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 결과
- 법령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된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근거로 조직 또는 개인이 실시한 자체 적합성평가 결과

적합성표시(CR Mark) 및 적합성표시의 사용은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제 14/2026/TT-BKHCN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제13a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a조 사후관리 주기

방식 5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강제 LPG 용기에 대해 시료시험과 생산공정 또는 경영시스템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시험용 시료는 제조 현장, 시장 또는 제조 현장과 시장 모두에서 채취할 수 있다.

최초 사후관리 평가는 인증서의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의 사후관리 평가는 직전 사후관리 평가 종료일부터 24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5. 제14조 및 제15조를 폐지한다.

제IV장 조직 및 개인의 책임

6.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LPG 용기의 제조·판매·수입 조직의 책임

1.

강제 LPG 용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조직은 본 기술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품

및 상품 품질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강제 LPG 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조직은 정부의 「표준 및 기술규정법의 일부 조항과 시행조치를 규정하는 2026년 1월 16일자 시행령 제22/2026/NĐ-CP호」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선언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7.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를 폐지한다.

제V장 시행

8.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성(省) 및 중앙직할시의 산업무역국(Sở Công Thương)은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위와 협력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본 기술규정의 시행을 지도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무역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관할 구역 내 LPG 용기와 관련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산업무역부(산업안전기술환경국)에 보고하여야 한다.